

근로장학생 운영 규정

(제정 2009. 3. 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이 교내 및 교외 시설 등에 배치되어 근무할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의 대가를 통하여 노동의 가치를 배울 수 있게 하는 근로 장학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의 “근로장학생”이라 함은 “교내근로장학생” 및 “국가근로장학생”을 말한다.

제3조(신청자격) 본교 재학생 중 가계곤란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가계곤란자 등)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① 근로 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매 학기말 4주전에 학생지원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근로 활동을 신청한 자는 가계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장학생 신청서 및 졸업 후 취업 등 경제활동조사에 대한 동의서
2. 가계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 의료보험납입영수증

제5조(근로장학생 선정 기준) 대학에 재학 중인 정규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순위로 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가족의 연간 소득이 “세대당 평균소득”에 미달하는 자
4. 가족의 연간 소득이 “세대당 평균소득”이상인 자 중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근로 장소) 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 한다.

1. 교내근로장학생 : 각 행정부서 등
2. 국가근로장학생
 - 가. 전공시설 : 산업체(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 학교기업),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연구소, 시험·측정기관, 실험·실습시설, 도서관 등 교내·외 시설
 - 나. 비전공시설 : 장애인,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학생 지원 시설

제7조(근로시간) ① 교내근로장학생의 근무시간은 학기중에는 본인의 수업시간표에 의해 휴강하는 시간(본인 및 행정부서 협의), 방학중에는 08:40 - 16:00까지 한다.

② 국가근로장학생은 학기중 본인의 수업시간표에 의해 주당 20시간 이내, 방학중에는 주당 40시간 이내로 한다.

제8조(장학금액) ① 교내 근로장학금액은 당해년도 장학위원회 결정 금액을 지급한다.

② 국가 근로장학금액은 매학기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는 금액을 지급 한다.

근로장학생 운영 규정 3-4-13-2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 8조의 교육부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